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탐지·집행 관리 강화, 지방정부와 재정 분담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 운영 규칙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 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부정수급 예방,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이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의 처리 및 관련 자료·정보의 저장·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현행성 유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정보가 실제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데이터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데이터 항목 및 코드체계
2. 데이터 형식 및 입력 기준
3.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제6조(입력 및 처리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집행 정보 처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 수령자에 관한 정보
2.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계약 또는 지급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지방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 내역(지급경로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제7조의2(집행 유형 처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집행 형태가 정보시스템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이 계약 또는 지급의 상대방을 통하여 집행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이 계약 또는 지급의 상대방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4. 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 수행 또는 성과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 유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제8조(검증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의 형식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필수 입력 값 여부확인
2. 데이터 형식 및 범위 검증
3. 중복 입력 방지

제9조(권한 및 접근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이력 및 로그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처리과정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이력 및 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연계 및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자료·정보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및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부정수급 탐지 및 예방 기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 관계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 그 밖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

제16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지침)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연 락 처	(044) 205 - 3617